

法務部 人權法案에 대한 검토

文俊朝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 문제의 제기

우리 나라에서 國家機關 등에 의한 人權侵害問題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금년에는 國內의 人權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기구의 설립을 상정하고 人權法 제정을 추진하여 왔다. 그 내용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法制定 자체가 획기적인 일이다. 法務部는 그 동안 많은 輿論收斂節次를 거쳐 人權法案을 가다듬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만큼 人權法案이 갖는 의미는 國內外의으로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法務部 草案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점은 역시 人權委員會의 法的 地位이며, 人權委員會의 構成과 業務의 中立性 및 權限 및 人權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人權의 內包와 관련하여서도 크게 논란이 전개되어 왔다. 또한 法務部의 草案의 內容만으로 人權法이라는 명칭이 과연 타당하냐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개인적으로는 法務部 草案의 條文構成도 대단히 엉성하여 法律로서의 形式과 相互連繫性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法務部의 最終案에서는 人權委員會의 法的 地位 및 權限과 관련된 문제이외에는 상당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일정은 평가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의 지위를 국가기구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법무부의 감독하에 있는 특수법인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비록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논의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2. 人權法上의 人權의 內包問題

人權法이라는 명칭이 붙는 法案이 되도록 하려면 人權의 理念的인 側面과 그 內包를 규정하고 그에 따르는 國家의 義務 등도 아울러 규정하는 등 世界人權宣言 및 國際人權規約을 비롯한 우리 나라가 가입한 많은 人權關聯 條約들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人權章典의 성격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한 인권관련 조약중에서 중요한 것만 열거한다하더라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노동기구헌장 및 동 기구의 인권관련 제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 따라서, 이들 조약의 실체적인 규정들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人權法에 반영되어

야 할 것이라고 본다.

法務部 草案에서는 人權法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人權關聯 부분의 내용이 부족하였으며, 주로 인권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차라리 國民인권위원회설치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 더 어울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인권의 정의를 최대한 넓히고 있어 적어도 보호되어야 할 인권의 내포에 관한 문제는 시정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 것 같다. 또한 법무부의 역할과 다른 부처의 역할에서 미묘한 차이이지만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통일한 점도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다만, 國民인권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부분이 법률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상당 부분을 시행령 등 하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이러한 규정들이 법률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하위법보다는 법률에서 망라하여 규율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크게 문제 삼고 싶지 않다.

또한, 인권의 내포중에서 특정한 것만 강조하였던 법무부 초안보다는 제3조 1호에서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자유의 권리를 말한다”라고 함으로써 보호될 인권을 원론적으로 정의한 부분은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권 즉, 기본권을 분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자유의 권리라고 함으로써 법안의 관련 규정의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자유권적 기본권만이 보호대상이 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이 부분의 표현을 약간만 수정하였으면 어떨까 한다. 물론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은 다른 어떠한 기본권보다도 중요하고 인권보장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제3조의 1호의 정의가 정한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간으로서의 자유 즉 자유권적 기본권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만약 국가기관으로서의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제5조와 제6조는 별도의 조문이 아닌 하나의 조문으로 묶어야 할 것이다.

3. 條文의 內容 · 構成 및 上호연계성 문제

法務部 最終案은 조문의 내용·구성 및 상호연계성면에서 초안보다는 훨씬 개선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差別行爲를 人權侵害行爲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前者가 後者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을 규정한 점은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0조에 언급된 差別行爲가 우리 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였는가, 또한 과연 우리나라에서 人種侮辱이나 性戲弄이 역시 독립된 조항을 둘 만큼 다른 어떠한 人權侵害行爲보다 심각한가 또한 이러한 人種侮辱과 性戲弄이 差別行爲를 대표할 만한 것들인가도 의문이다. 또한, 마치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차별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이 법률이 인권침해행위 중 차별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 우려가 있다. 또한 제2장이 수사기관 등의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라고 하여, 수사기관 등의 행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8조 및 제9조에 가려서 다른 국가기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는 잘 나타나 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제8조와 제9조는 굳이 구분하여 정할 필요가 없으며, 묶어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즉, 제9조의 제목을 “수사기관 등의 인권침해행위의 금지”로 하고, 제8조의 본문에서는 “검찰, 경찰 … 中略 … 職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한다. 또한 제10조도 본문에서 지적하였다 시피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본다면, 굳이 별도의 조항을 두기 보다는 차라리 제3조의 정의조항에서 그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제11조와 제12조에서 人種侮辱이나 性戲弄만을 특정하여 별도의 조항을 둘으로써 마치 그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인권침해유형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제3조의 ‘인권’에 관한 정의규정 및 제8조 제8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조항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제13조에서 보면 누구든지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3조는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도 금지된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그러하다면,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도 이 법상의 국민인권위원회의 관할사항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범위내에서 다른 주무 관청이 관할할 수 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제3장의 규정을 보면, 제8조에 규정된 다수인보호시설의 경우가 아니면 사인에 의한 행위는 국민인권위원회의 관할사항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굳이 제13조에서 차별행위의 금지라는 조항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 조항 대신에 차라리 인권침해행위의 금지라는 조항을 제1장에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4. 국민인권위원회의 관할사항

제19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5호 및 제6호, 제8호,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내용으로는 국민인권위원회의 업무는 제3조에서 정의한 인권 전반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동 위원회의 조사와 구제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제3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것일 뿐이다. 즉, 수사기관 등의 인권침해행위가 그 관할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갖지 아니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은 제22조가 제19조 제2호(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연구와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5호(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작성지원), 제9호(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사단체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어디에도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사단체에서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국민인권위원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 즉,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인권침해행위중 국민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수사기관 등의 인권침해행위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가지 지적할 점은 제39조 3호에서 보듯이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제8조에 나타난 수사기관 등의 인권침해행위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차별행위이다. 제12조는 누구든지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도 국민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보이는 듯하지만, 다른 관련 규정들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해석할 수만도 없다. 만약,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국민인권위원회가 다른 국가기관과 다른 공·사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와 권고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는 결국 국민인권위원회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 법안에 나타난 人權侵害 主體에 의한 행위들만이라도 방지하고 시정한다면 우리 나라 人權狀況은 현저하게 개선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모든 國家機關에 의하여 또는 모든 社會 分野에서 행하여지는 人權侵害를 다룰 수 있는 人權機構를 만든다면 그 業務量이나 그에 따른 財政的 負擔은 막대하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지만, 이왕에 인권위원회를 만든다고 한다면, 또한, 말 그대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보호와 구제의 틈새를 보완하는 것을 인권위원회의 본질적인 역할로 한다면, 국민인권위원회가 관할하는 인권침해행위의 주체의 범위를 보다 넓혔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5. 人權委員會의 法的 地位問題

1) 政府組織法上 人權擁護事務의 所管部處

人權法案 제3장은 國民人權委員會의 設置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現行法上 人權 문제에 대한 소관부처는 法務部이다. 政府組織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法務部長官은 檢찰· 행형· 人權擁護· 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掌理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法務部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3조(직무)는 法務部가 … 人權擁護…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법무실) 제5항은 법무실 人權課가 人權擁護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1호), 人權關聯法令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제2호), 人權擁護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제3호), 人權問題에 관한 홍보대책에 관한 사항(제4호), 人權關聯 國際協約의 가입 및 국내적 시행에 관련된 법률 문제의 검토에 관한 사항(제5호), 人權關聯 國際會議의 참가 및 개최에 관한 사항(제6호) 및 人權擁護 團體에 관한 사항(제13호)에 대하여 관장한다.

따라서 政府組織法에 의한다면 國內에서의 人權保護에 관한 한 당연히 法務部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人權保護의 問題는 모든 國家機關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法務部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人權侵害事例도 많았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인권보호의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2) 人權法案上의 國民人權委員會의 問題點

(1) 意義

人權法案의 내용중에서 가장 큰 關心事項은 역시 人權保護專擔機構의 法的 地位에 관한 문제이다. 어떠한 사람은 우리 나라가 심각한 人權侵害國은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기존의 政府部處와의 業務重複을 이유로 法務部와는 별개의 國家機關을 설치하여 人權保護業務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法務部가 그 傘下 特殊法人形태로 國民人權委員會를 설치하고자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한 拒否感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法務部가 또 하나의 傘下機關을 설치하려는 部處 利己主義的 發想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冷笑主義的 視覺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人權法에서 예정하고 있는 國民人權委員會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法人인 國民人權委員會가 여려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法人인 國民人權委員會

가 國家機關에 의한 人權侵害救濟機構로서 그 機能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의 出發點이자 終着點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그 러한 機能의 遂行을 위하여 요구되는 同 委員會의 獨立性 및 權限의 範圍·強度와 銅錢의 兩面을 이루고 있다.

(2) 獨立性 問題

法務部 草案이 國民人權委員會를 지나치게 法務部長官에 隸屬시켜 놓았던데 비해 최종안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사회를 없앴거나 법무부 장관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하여 또는 사전 협의하에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점은 대해서는 법무부가 어떻게 하면 국민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고심하였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法務部 산하의 民間機構가 업무상의 독립을 보장받았다 할지라도 監督權을 가진 法務部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委員會가 제23조에 의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연례보고서 또는 특별보고서를 제출할 때 법무부 장관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으며(제63조 1항), 제17조 2항에 의한 정관의 변경, 제19조 2호, 5호, 7호 및 9호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제49조 1항에 의한 권고, 제55조 1항 및 2항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제57조 1항 및 2항에 의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와 제6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법무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제63조 2항).

이 규정은 국민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한 절대적으로 삭제할 수 없는 규정일 수 있으며, 통보라는 절차가 사후의 통보를 의미한다고 일용 보여지지만 자칫 국민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크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이러한 조항을 넣는다면, 사전에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도록 법안에 명기하도록 하면 어떠할까 한다.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국민인권위원회의 業務上의 獨立性이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國民人權委員會가 國家機關의 人權侵害에 대한 구제를 그 기능으로 하고 있지만 法務部長官에 의해 事前 또는 事後에 어떠한 형태로든 統制될 수 있다면 허울에 불과한 人權救濟機構로 전락하게 될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3) 勸告機能과 調査 問題

國民人權委員會가 國家機關이 아니라는데서 오는 胎生的인 限界를 벗어나기 어렵다. 즉, 委員會는 단순한 勸告機能만을 가질 뿐이며 民間機構로서의 권고기능은 그 效率性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본다. 물론 국가기구로서의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권고기능만을 부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간기구=권고기능, 국가기구=시정기능으로 도식화할 수는 없으며, 국가기구로서의 인권위원회가 권고기능을 갖는게 좋으나 아니면 권고기능만을 갖는게 좋으나의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국민인권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예컨대, 유럽인권재판소가 내린 판결이 당사국을 구속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인권위원회의 권능을 시정명령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국내의 인권보호와 신장에 순기능을 하지 않을까 한다. 참고로 國際人權規約(B規約)과 舊勞動爭議調整法上의 제3자介入禁止條項과 관련된 判決을 보면 권고기

능의 한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손종규는 (주) 금호의 노동조합위원장으로 1990년 10월의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파업에 제3자로 개입한 사실로 구속기소되었으며 당시 勞動爭議調整法 제13조 2의 위반으로 1991년 8월 9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1992년 4월 14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그 후, 피고가 '제3자 개입금지' 행위라 하여 원고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國際人權規約(B規約) 제19조 제2항이 인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동 규약 선택의 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라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이 사건을 통보하였다.

인권위원회는 1995년 7월 15일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처벌한 것은 동規約 제19조 제2항이 인정한 원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정하고 이와 아울러 원고는 동規約 제2조 제3항 a에 따라 그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처벌된 데 대하여 적절한 배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고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장래에 대해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동規約 제19조 제2항이 인정한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 범죄로 처벌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음에도 그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을 당하였으므로 금전배상을 포함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여 주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抗訴審에서는 동規約 제19조 제3항이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表現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라고 규정하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음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원고의 문제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合憲決定된 條文에 의거하여 피고 소속공무원들이 公訴를 제기하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동規約 제2조 제3항 a에 의하여 직접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거나 피고 소속공무원들의 행위가 不法行為를 구성한다거나 피고가 구체적으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를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인권위원회의 견해는 이른바 권고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 법적인 기속력을 인정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判決은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회가 피고가 문제의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처벌한 것은 동規約 제19조 제2항이 인정한 表現의 自由를 침해하였음을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문제의 행위가 大韓民國 憲法이 보장하는 表現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임을 재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국제인권규약이라는 국제적인 人權保護基準보다는 국내적인 人權保護基準을 우선시한 것이며, 국제인권규약은 물론이고 인권위원회의 권고도 국내법의 내용과 그 해석에 따라 배

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권고기능만을 가진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 점은 국민인권위원회의 권능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3) 代案: 是正命令權을 가지는 獨立된 國家機關으로서의 委員會

國民人權委員會가 委員會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行政法上의 委員會와 그 지위와 관련하여 대단히 큰 混亂을 초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人權保護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法務部가 主務部處이다. 그런데 人權의 保護問題를 國家의 중요한 事案으로 보고 새로운 機構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는, 發想의 轉換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요한 國家的 業務에 대해서는 獨立性과 權限을 부여하기 위하여 從前의 所管部處와는 별개의 지위를 인정받는 中央行政機關으로서의 委員會나 合議制 行政機關을 설치하여 온 과거의 先例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獨占規制 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에 의하여 설치된公正去來委員會는 동법 제35조 제2항에서 政府組織法에 의한 中央行政機關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任用機關과 豫算編成機關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關係 法令에서 中央行政機關을 主務官廳으로 규정하거나 協議奇觀으로 하거나 指揮·監督의 體系로 보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中央行政機關인지의 여부는 立法에 있어서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기준이 된다.

한편, 政府組織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部·處 등 中央行政機關의 관장업무중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合議制 行政機關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女性特別委員會는 그 法의 地位와 관련하여서는 論難이 있을 수 있으나 女性政策에 대한 綜合的인 企劃·調整에 관한 사항, 女性發展基本法 제15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政府의 事務, 각종 法, 制度, 行政措置 및 慣行 등에 나타나는 女性差別에 대한 調査 및 差別是正에 관한 사항을 所管事務로 하고 있다. 또한, 政府組織法 附則 제5조 제17항에 의하여 青少年保護委員會가 青少年保護法 제정 당시의 文化體育部(현재의 文化觀光部) 所屬에서 國務總理 所屬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青少年 業務를 관掌하는 機關은 文化觀光部와 青少年保護委員會로 二元化되어 있다.

이와 같이 종전에 中央行政機關의 所管事務였다 하더라도 그 事務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機關을 만들어 그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과연 人權保護問題가 獨占禁止 및 規制, 女性差別防止 또는 青少年保護 問題보다 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人權保護가 대단히 중요한 國家的인 重大事項라고 한다면, 人權保護를 위한 새로운 國家機關의 설치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人權委員會의 운영에 따른 財政負擔側面에서도 法務部 소속의法人으로 하든 國家機關으로 하든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또한 단순한 권고기능보다는 시정명령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법 규정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며, 인권위원회에 별도의 전담부서를 두어 꾸준히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여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맞도록 국내법의 제정과 개폐를 조사하고 그 시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한다.

바람직한 인권법의 방향

강 경 선 (방송대 교수, 법학)

국민인권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무부의 인권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처음부터 개략적으로 법률내용을 검토할 때부터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었었다. 그러나 인권을 부각시키고, 또 좋은 내용도 많이 포함되고 있어서 인권관계인들이 지혜를 모아서 우선 금년도에 인권법제정과 국민인권기구를 창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인권법은 사실상 헌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인권을 관掌하는 국민인권위원회도 헌법적 기구로 만들어져야 마땅하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헌법개정과 후속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은 가급적이면 손쉬운 것부터 합의를 보고 어려운 것은 훗일로 미루는 것을 합의함으로써 인권법을 일단 21세기의 바다로 띄어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예컨대 금년도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권한만 좀 손질하고, 국민인권위원회의 일에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조금 열어놓고, 그 기능도 인권교육과 자료수집, 연례보고서 발간, 인권침해사례 고발정도로 시작하고, 그러다가 몇 년동안 인권관계 자료가 많이 축적되며, 그때가서 인권위원회의 강제수사권까지 확대해나가는 순서를 잡으면 좋겠다고 보았다. 그리고 헌법개정이나 통일시의 헌법개편기에 들어서서는 국민인권위원회를 감사원정도의 인권보호원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아가면 좋겠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무부안은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쳐 원래 공표한다고 한 12월 10일을 며칠 앞둔 현재 국회의 정기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렀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한두가지 문제점만 해소시키고, 나머지는 미래로 열어두는 합의, 약속, 경과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법의 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불행에까지 오는데 가장 잘못은 우선 법무부가 지나치게 국민들에게 법안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금년도 6월인가에 법무부는 인권법제정의 일정을 언론에 보도했다. 즉 12월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인권법제정에 대한 소신을 밝혔던 것이다. 그 후로도 법무부는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를 않았다. 10월 말경이나 되서 비로소 시안이 밝혀졌다. 인권법은 국민의 법이란 사실을 법무부는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인권법이 법무부가 만든다고 해서 법무부의 것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자신들이 초안단계에서부터 제정, 그리고 나중에 사후집행까지도 국민을 위해서 잘 하겠다는 자신의 오만에 빠져있었다. 아마 11월 중순경에 들어서서야 관심있는 헌법학자들이 인권법이 무엇인가를 알게되었다. 그래도 헌법학자들은 기본권을 다루는 인권의 학자들이며, 어차피 앞으로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법관련 연구와 비판, 교육의 일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될텐데, 이들조차도 장차 법무부가 만든다는 인권법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아무런 공청회 과정이 열린 바가 없었다. 이런 비공개성은 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처리하게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이라고 본다.

인권법이 제정되는 경우에도 우리는 ‘민주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날에도 많은 인권관련법들이 제정되었다. 모든 법치고 인권보장과 무관한 법이 어디있는가? 그러나 바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지 못했었기에 우리는 불법국가에 살았던 것이다. 지금도 매 한가지다. 아무리 인권법을 만든다고 해도 민주성의 원칙은 견지되어야 한다. 절차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다. 이번 인권법은 지금도 국민들과는 동떨어져 있음을 본다.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도록 사전에 정치작업을 잘하면, 나중에 만들고 나서도 얼마나 국민들 참여가 높겠는가? 반대의 경우에는, 설사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과는 관계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인권법의 신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권법을 제정하고 선포하는 날, 그동안 우리 사회에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인권축제의 날로 만 들어야 한다. 차별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평등의 정책발표와 양심수를 비롯한 억울한 재소자들에 대한 전면적 석방을 동시에 행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회법 제정방향에 관한 토론 요지

김영희(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법학박사)

1. 인권위원회는 꼭 필요한 기구인가?

현재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인권위원회의 위상이나 권한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과연 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기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라던지, 새정부 100대 정책과제의 하나라는 이유만으로는, IMF 이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어디에서나 추진되고 있는 조직감량·기구축소에 배치되는 새로운 기구의 설치가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권수호를 위한 또 다른 기구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 권고안은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전담하는 특수한 기구를 설립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그러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재정의 낭비에 해당하며, 인권침해를 방지하는데는 독립적인 사법부와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불행히도, 역사는 우리에게 (현실이 위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다. 행정부와 사법부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분리·독립된 (인권)기구는 인권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위치에 있다. 국내인권기구는 집권부로부터 실제적이고 의식적인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문화를 개발하려는 국가적 노력에 자기만의 고유한 공헌을 할 수 있다.” (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 권고안 문단 298,299) 즉 경험적으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행정·사법·입법의 국가기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와는 별개의 독립된 기구, 또 집권정부와 거리를 갖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인권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은 무엇인가?

인권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 권고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내인권기구의 목적은 다른 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 없는(또는 수행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국내인권기구는 기존의 기구들과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국내인권기구가 인권침해사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그것의 관할권은 사법부의 관할권과 중첩될 수 있다. 특히 인권관련법이 제정되어 있거나, 국가가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권리장전을 보유하고 있을 때 (관할

권)이 중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개인이나 집단들이 국내인권기구를 대안적 분쟁해결기구로 활용할 것이 기대된다. 제대로 기능하는 진정(처리)기구는 접근이 더 수월하고, 분쟁처리가 더 유연하고 신속하고, 전문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또는 전혀 안) 든다는 이유 때문에 법원에 비해 더 많이 이용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의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국내인권기구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사법부를 보완할 수 있을 뿐이고, 절대 대체하지는 못한다. 최종관할권은 법원에 속한다.”(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 권고안 문단 91,92) 즉 인권위원회는 대안적 분쟁해결기구로써, 다른 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 없는(또는 수행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분쟁의 최종관할권은 법원에 있으나, 법원에 비해 인권위원회가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 그 접근이 더 수월하고, 분쟁처리가 더 유연하고 신속하며, 전문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또는 전혀 안) 든다는 점입니다.

3. 인권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걸맞는 인권위원회의 위상은?

인권위원회의 위와 같은 기능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로 하기 보다는 특수법인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국민이 더 수월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어렵고 무섭다고 느끼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친숙하게 느낄 수 있고,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분쟁처리의 속도가 더 신속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려면 관료화되기 쉬운 국가기구보다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인권위원회가 대안적 분쟁처리기관으로 존립하려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경합적인 국가기구의 형태보다는 보완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치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특히 유사기능의 정부조직이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대안적인 인권보호기구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도 인권위원회가 특수법인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4. 효과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은?

우리 나라에서 성차별 개선, 여성의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업무는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관련 부당해고 및 근로여성에 대한 차별행위 조정등의 업무는 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와 고용평등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법·부당한 남녀 차별에 대한 조사,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권을 여성특별위원회 소속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와 동시에 노동부는 향후 전 지방노동관서에 고용차별에 관한 조사 및 사법처리업무등을 담당할 고용차별전담부서를 확대 설치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용상의 성차별에 관해서는 여성특별위원회 소속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노동부 양자가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국가기구로 설치될 경우 성차별과 관련하여서 위 두 기구와의 기능중복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권위원회는 현존하는 국가기구와 경합해서는 안되고 그것을 보완하는 대안적 분쟁처리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권위원회는 남녀차별과 관련해서 이들 기관

과 중복된 기능을 행사하기 보다는, 부당한 성차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일반국민이 국가기관보다 더 수월하고 용이하게 인권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분쟁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성차별을 당한 국민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인권위원회가 성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권을 갖지 못하고, 단순히 시정권고, 조정, 의견표명, 임시구제조치요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저비용으로 신속히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국민에 의해 많이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인권위원회 1997년도 보고서를 보면 1997년도에 접수된 진정사건 총 2,025건 중 구속력 있는 차별중지 및 손해배상명령을 구하기 위해 인권심판소 Human Rights Tribunal에 제소된 사건은 총 24건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조사중이나, 조정에 의해 해결된 사건은 169건에 달했다.)

인권위원회가 특수법인으로 설치된다면 그 독립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할 것인가, 특수법인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수법인으로 할 경우 그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될까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에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한 것이 법무부 인권법 시안의 이사회제도, 민법상 재단법인 준용기준, 정관변경에 대한 법무부장관 인가권, 감사제도, 기부금 수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고조항, 인권위원회의 출연금에 대한 법무부의 예산심사권 등이었는데, 법무부가 공추위안과 이기문 의원안을 수용하여 위 사항들을 폐지 또는 삭제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무부안에는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조항(예: 법무부안 제 63조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 및 경유조항)이 있는데,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대로 기능하는 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위하여 위 규정을 삭제할 것을 건의합니다.

5.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몇가지 제언

- 인권위원의 임명방식: 국회의원 2/3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인권위원의 임명에 야당의 의사도 반영 가능하기 위해)
- 인권위원의 수와 임기: 상근위원 9명, 위원장 1명, 6년 단임
- 인권위원회의 연례보고서: 법무부장관을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人權法(案)

1998. 11 法務部

목 차

第1章 總 則

- 第1條 【目的】
- 第2條 【基本方針】
- 第3條 【定 義】
- 第4條 【國家機關의 義務】
- 第5條 【法務部의 役割】
- 第6條 【外交通商部·教育部·保健福祉部·勞動部·女性特別委員會 等의 役割】
- 第7條 【國民의 義務】

第2章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

- 第8條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
- 第9條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의 禁止】
- 第10條 【差別行爲】
- 第11條 【人種侮辱】
- 第12條 【性戲弄】
- 第13條 【差別行爲의 禁止】

第3章 國民人權委員會

第1節 設立 및 業務

- 第14條 【設立】
- 第15條 【地位】
- 第16條 【事務所】
- 第17條 【定款】
- 第18條 【登記】
- 第19條 【業務】

第20條【拘禁·保護施設의 視察】
第21條【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調要請】
第22條【勸告 등의 相對方 및 勸告에 대한 尊重義務】
第23條【年例報告書 등의 提出】

第2節 組織 및 運營

第24條【委員會의 構成】
第25條【小委員會】
第26條【委員長의 職務】
第27條【委員의 任期】
第28條【委員의 待遇】
第29條【委員의 缺格事由】
第30條【委員의 身分保障】
第31條【會議議事 및 議決定足數】
第32條【除斥, 忌避, 回避】
第33條【事務處의 設置】
第34條【資格許稱의 禁止 等】
第35條【類似名稱使用의 禁止】
第36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37條【代理人의 選任】
第38條【委員會의 組織·運營등】

第3節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 등의 調査와 救濟

第39條【委員會의 調査對象】
第40條【陳情人의 適格】
第41條【陳情의 方式】
第42條【陳情의 却下】
第43條【調查의 開始】
第44條【調查의 目的】
第45條【調查의 方法】
第46條【調查의 限界와 事實照會】
第47條【陳情의 移送】
第48條【調查의 中止】
第49條【臨時救濟措置 勸告】
第50條【合意勸告】
第51條【調停節次의 開始】

第52條【調停】
第53條【調停의 效力】
第54條【法律救助】
第55條【救濟措置 등의 勸告 및 意見表明】
第56條【陳情의 棄却】
第57條【告發 및 搜查依賴】
第58條【意見陳述機會의 附與】
第59條【決定의 通知】
第60條【調查등의 非公開】
第61條【勸告등의 公表】
第62條【措置結果등의 通報】
第63條【法務部長官에 대한 經由 및 通報】
第64條【人權狀況分析報告書】
第65條【準用規定】
第66條【陳情處理節次등】

第4章 國家의 支援 등

第67條【公務員등의 派遣】
第68條【出捐金의 交付】
第69條【財產의 寄附】

第5章 罰則

第70條【罰則】
第71條【過怠料】

附 則

第1條【施行日】
第2條【設立準備】
第3條【人權委員의 任期에 관한 特例】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이 法은 모든 사람에게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보장하기 위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人權侵害을 防止·救濟하고 人權을 최대한 伸張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基本方針】① 이 法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實踐함을 基本方針으로 하며, 國家는 이 基本方針을 수행하는 第1次의인 책임을 진다.

1. 人權意識 鼓吹를 위한 教育 및 弘報
2. 人權에 관한 法令·制度·政策·慣行의 改善
3. 人權侵害에 대한 迅速한 調査와 救濟
4. 其他 人權의 擁護와 伸張에 필요한 措置

② 國民人權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方針의 수행에 관하여 國家의 活動을 監視하고 그 活動이 充分하지 아니할 경우 그 基本方針을 수행하는 책임을 진다.

第3條【定義】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人權”이라 함은 憲法 및 法律에서 보장하거나 大韓民國이 加入·批准한 國際人權條約 및 國際慣習法에서 인정하는 人間으로서의 自由와 權利를 말한다.
2. “矯正機關等”이라 함은 矯導所, 少年矯導所, 拘置所, 保護監護所, 治療監護所, 少年院, 少年分類審查院을 말한다.
3. “多數人保護施設”이라 함은 多數人을 保護·收容하는 시설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시설을 말한다.
4. “拘禁·保護施設”이라 함은 警察署 留置場, 矯正機關等, 外國人保護所, 軍矯導所(軍拘置所 및 憲兵隊의 營倉을 포함한다), 多數人保護施設을 말한다.
5. “中央國家機關의 長”이라 함은 國會議長, 大法院長, 憲法裁判所長, 中央選舉管理委員會 委員長, 憲法 또는 政府組織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설치된 中央行政機關 또는 合議制行政機關의 長을 말한다.

第4條【國家機關의 義務】① 國家機關은 第2條第1項의 基本方針에 따라 人權教育 및 弘報, 人權에 관한 法令·制度·政策·慣行의 개선, 人權侵害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法的·制度的 裝置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財源의 調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國家機關은 法令·政策의 집행과정에서 人權을 侵害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條【法務部의 役割】法務部長官은 第4條의 國家機關의 義務를 履行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人權擁護에 관한 綜合計劃의樹立 및 施行

2. 人權擁護에 관한 各 部處間의 協力
3. 國民人權委員會에 대한 支援
4.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위하여 活동하는 團體 및 個人과의 協力

第6條【外交通商部·教育部·保健福祉部·勞動部·女性特別委員會 등의 役割】① 外交通商部長官은 國際人權條約의 加入, 人權과 관련된 國際機構活動의 參加, 在外國民의 人權侵害의 豫防과 救濟를 통하여 人權의 擁護 및 伸張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教育部長官은 各級 學校의 教育課程에 人權에 관한 教育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女性, 障碍人, 高齡者, 兒童 등 社會의 弱者の 福祉增進을 통한 人權伸張에 노력하여야 하며 多數人保護施設에서 人權侵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 ④ 勞動部長官은 雇傭의 促進과 勤勞條件의 向上을 통한 勤勞者의 人權伸張에 노력하여야 하며 雇傭分野에서 差別行爲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 ⑤ 女性特別委員會 委員長은 女性에 대한 差別行爲를 豫防·是正·改善하는 활동을 통하여 女性人權의 擁護와 伸張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⑥ 其他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所管 業務에 관하여 第2條第1項의 基本方針을 수행하기 위한 方案을 講究하고 이를 實行하여야 한다.

第7條【國民의 義務】모든 國民은 人權의 意味와 重要性을 인식하고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2章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

第8條【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는 檢察, 警察, 國家安全企劃部, 矯正機關等, 保護觀察所, 出入國管理事務所(外國人保護所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公務員,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 行할者와 그職務範圍에 관한法律에서 규정한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하는 者, 軍檢察·憲兵·機務部隊에 소속된 軍人 및 軍務員, 위 공무원, 사법경찰관리의 職務를 行하는 者, 군인 및 군무원으로부터 使嗾를 받은 자 또는 多數人保護施設에 소속된 職員이 그 業務遂行과 관련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하는 行위
2.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權利行使를妨害하는 行위
3.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押收 또는 搜索하는 行위
4.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郵便物의 檢閱, 電氣通信의 監聽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他人間의 密密을 침해하는 行위
5.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私生活에 관하여 寫眞을 摄影하여 公開하거나 그 密密을 漏泄하는 行위
6.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拘禁·保護施設의收容者나 被保護者를 憲戒 또는 憲罰하는 行위

7. 사람에 대하여 暴行, 脅迫, 拷問 등 苛酷한 행위를 하거나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8. 사람을 侮辱하거나 性的 羞恥心을 誘發하는 행위

第9條【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의 禁止】 第8條에 規定된 公務員,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하는 者, 軍人, 軍務員, 그 使嗾를 받은 자 및 職員은 第8條 各號에서 規定한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0條【差別行爲】 “人權侵害行爲 중 差別行爲(이하 “差別行爲”라 한다)”는合理的인 理由 없이 性別(出產 또는 妊娠을 포함함), 宗教, 年齡, 障碍, 社會的 身分, 出身學校, 出身地域, 出身國家, 出身民族, 容貌 등 身體的 條件, 婚姻與否, 家族의 狀況, 政治的 見解, 人種 또는 皮膚色에 기하여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여 憲法 第11條第1項에 規定한 平等權을 侵害하는 行爲를 말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서 特定한 사람(特定한 사람들의 集團을 포함한다. 以下 같다)에 대한 優待를 差別行爲의 範圍에서 제외

한 경우 그 優待는 이 法에서도 差別行爲로 보지 아니한다.

1. 雇傭(募集, 採用, 教育, 配置, 昇進, 賃金 및 賃金外의 金品 支給, 資金의 融資, 停年, 退職, 解雇 등을 포함한다. 以下 같다)에 있어서 特定한 사람을 優待, 排除, 區別 또는 不利하게 待遇하는 行爲
2. 財貨 · 用役 · 交通手段 · 商業施設 · 土地 · 住居施設의 供給이나 利用에 있어서 特定한 사람을 優待, 排除, 區別 또는 不利하게 待遇하는 行爲
3. 教育施設이나 職業訓練機關의 利用에 있어서 特定한 사람을 優待, 排除, 區別 또는 不利하게 待遇하는 行爲
4. 其他 政治 · 經濟 · 社會 · 文化的 모든 領域에 있어서 特定한 사람을 優待, 排除, 區別 또는 不利하게 待遇하는 行爲

第11條【人種侮辱】 第10條第1號乃至 第3號의 規定에 의한 雇傭, 財貨 · 用役 · 交通手段 · 商業施設 · 土地 · 住居施設의 供給이나 利用 또는 教育施設이나 職業訓練機關의 利用에 있어서 人種 · 皮膚色 · 出身國家 또는 出身民族을 이유로 特定한 사람에 대하여 敵對感 또는 憎惡心을 表明하거나 輕蔑 또는 嘲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侮辱感을 느끼게 하는 行爲는 人種 · 皮膚色 · 出身國家 또는 出身民族에 基한 差別行爲로 본다.

第12條【性戲弄】 業務, 雇傭 其他 關係로 인하여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者에게 性과 관련된 言動을 하여 그로 하여금 性的 侮辱感 또는 嫌惡感을 느끼게 하는 行爲는 性別에 기한 差別行爲로 본다.

第13條【差別行爲의 禁止】 누구든지 差別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章 國民人權委員會

第1節 設立 및 業務

第14條【設立】 ① 搜查機關등에 의한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 등을 調査 · 救濟하고 기타 人權의 摊護와 伸張을 효과적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國民人權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② 委員會는 特殊法人으로 한다

第15條【地位】 ① 委員會는 그 權限에 속하는 業務를 獨立的으로 手行한다.

② 委員會는 人事 등 組織 運營에 필요한 事務를 獨立的으로 手行한다.

③ 委員會는 그 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內部規則를 制定할 수 있다.

第16條【事務所】 ① 委員會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定한다

② 委員會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支部를 設置할 수 있다

第17條【定款】 ① 委員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記載한다.

1. 目的
2. 名稱
3. 主된 事務所 및 支部에 관한 사항
4.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5. 豈算 및 會計에 관한 사항
6. 小委員會에 관한 사항
7. 事務處에 관한 사항
8. 人權委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9. 定款의 變更에 관한 사항
10. 內部規則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11.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 委員會는 在籍 人權委員 3分의2 以上的 賛成으로 定款을 變更할 수 있다.

第18條【登記】 ① 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는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登記後가 아니면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9條【業務】 委員會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人權 教育 및 弘報

2. 人權에 관한 法令(提案된 法令案을 포함한다) · 制度 · 政策 · 慣行의 研究와 그 改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勸告 또는 意見表明
3.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 등에 대한 調査와 救濟
4. 國際人權條約에 따른 政府報告書 작성 支援
5. 國際人權條約의 加入 및 履行에 관한 研究와 勸告 또는 意見表明
6. 國家機關이 요청하는 人權에 관한 研究와 諮問
7. 拘禁 · 保護施設에 대한 視察과 그 改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勸告 또는 意見表明
8. 人權狀況에 관한 實態調查
9. 人權侵害의 類型, 判斷基準 및 그豫防措置 등에 관한 指針의 提示 및 勸告
10.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위하여 활동하는 團體 및 個人과의 協力
11. 人權과 관련된 國際機構 및 外國의 人權機構와의 交流 · 協力
12. 第1號 내지 第11號의 業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業務

第20條【拘禁 · 保護施設의 視察】 ① 委員會는 人權實態 파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人權委員으로 하여금 第19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視察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人權委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委員會의 職員 및 專門家를 同伴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視察하는 人權委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收容者나 被保護者를 面談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視察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視察하는 人權委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21條【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調要請】 ① 委員會는 第19條의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 · 私團體에 필요한 資料提出 및 事實照會 등 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로부터 요청을 받은 國家機關 등은 이에 성실히 協助하여야 한다.

第22條【勸告 등의 相對方 및 勸告에 대한 尊重義務】 ① 委員會는 第19條第2號, 第5號, 第7號, 第9號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意見表明을 關係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 · 私團體에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로부터 勸告를 받은 關係 國家機關 등의 長은相當한 理由가 없는 한 이를 尊重하여야 한다.

第23條【年例報告書 등의 提出】 ① 委員會는 每年 2月 末까지 委員會의 前年度 活動狀況에 관한 年例報告書를 大統領과 國會에 提出하고 이를 國民에게 公表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大統領과 國會에 特別報告書를 提出할 수 있다

第2節 組織 및 運營

第24條【委員會의 構成】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9人 以內의 人權委員(以下 "委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委員長과 委員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法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1. 社會的 信望이 높고 人權에 관한 識見과 經驗이 있는 者로 主要 社會團體로부터 推薦을 받은 者

2. 判事 · 檢事 · 軍法務官 또는 辩護士의 職에 15年 以上 있던 者

3. 大學이나 公認된 研究機關에서 副教授 이상 또는 이에相當한 職에 15年 以上 있던 者

4. 2級 以上 公務員의 職에 5年 以上 있던 者

5. 人權委員會의 職員으로서 20年 以上 근무한 者

③ 委員長은 常任으로 하고, 委員長이 아닌 委員中 3人을 常任으로 한다.

④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을 任命함에 있어 法曹界, 女性界, 勞動界, 市民團體 등 社會의 각 分野를 代表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中 3人 以上을 辩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 任命하여야 한다.

⑥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中 2人 以上을 女性으로 任命하여야 한다.

⑦ 任期가 滿了된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은 그 後任者가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第25條【小委員會】 ① 委員會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常任委員 1人을 포함한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는 小委員會로 하여금 審議 · 議決하게 할 수 있다.

1. 定款의 變更, 豈算 및 決算, 內部規則의 制定 및 改廢, 財產의 取得 및 變更 등 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사항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拘禁 · 保護施設의 視察, 第39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議決, 第41條第1項第1號 但書의 規定에 의한 議決,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 등의 公開에 관한 사항

3. 委員會의 종전 議決例를 變更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小委員會에서 議決되지 아니하거나 小委員會가 委員會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5. 기타 委員會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委員會에서 審議 · 議決한 사항은 委員會에서 審議 · 議決한 것으로 본다.

第26條【委員長의 職務】 ①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한다

② 委員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指名한 常任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27條【委員의 任期】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第28條【委員의 待遇】 ① 委員長은 行政各部의 長官과 동일한 禮遇와 報酬를 받는다.
② 常任委員은 行政各部의 次官과 동일한 禮遇와 報酬를 받는다.

第29條【委員의 缺格事由】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委員長 및 委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3. 公務員(教育公務員은 제외한다)
4. 政黨의 黨員
5. 公職選舉及選舉不正防止法에 의하여 實시하는 選舉에 候補者로 登錄한 者
- ② 委員長 또는 委員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退職된다

第30條【委員의 身分保障】 委員長 또는 委員은 身體上 또는 精神上의 障碍로 職務遂行이 顯著히 困難하게 되거나 不可能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意思에 反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第31條【會議議事 및 議決定足數】 ① 委員會의 議事는 委員長이 主宰하며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委員 過半數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② 小委員會의 議事는 常任委員이 主宰하며 構成委員 全員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第32條【除斥, 忌避, 回避】 ①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陳情의 審議·議決에서 除斥된다.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였던 자가 當該 陳情의 當事者(陳情人, 被陳情人 및 被害者가 아닌 者가 제기한 陳情의 被害者를 말한다. 以下 같다)이거나 그 當事者와 共同權利者 또는 共同義務者인 경우
2. 委員이 當該 陳情의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委員이 當該 陳情에 관하여 證言이나 鑑定을 한 경우
4. 委員이 當該 陳情에 관하여 當事者の 代理人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委員이 當該 陳情에 관한 搜查 또는 裁判에 관여하였던 경우
- ② 當事者는 委員에게 審議·議決의 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委員長은 이 忌避申請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決定한다. 다만, 委員長이 결정하기에相當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委員會의 議決로 결정한다.
- ③ 委員本人이 第1項 各號의 1의 事由 또는 第2項의 事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陳情의 審議·議決을 回避할 수 있다.

第33條【事務處의 設置】 ①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事務處를 둔다.
② 事務處에 事務總長 1人을 포함한 필요한 職員을 두며 事務總長을 제외한 職員은 委員長이 任命한다.
③ 事務總長은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 ④ 事務總長은 委員長의 命을 받아 事務處의 事務를 처리하고 所屬 職員을 指揮·監督한다.
- ⑤ 事務總長은 行政各部의 次官과 동일한 禮遇와 報酬를 받는다.

第34條【資格詐稱의 禁止 等】 ① 누구든지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의 資格을 詐稱하여 委員會의 權限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업무처리中 知得한 祕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5條【類似名稱使用의 禁止】 委員會가 아닌 者는 國民人權委員會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36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① 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3條,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② 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은 國家公務員法 第65條, 第84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37條【代理人의 選任】 委員長은 委員과 職員중에서 委員會의 業務에 관하여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38條【委員會의 組織·運營 등】 이 法에 規定된 것 이외에 委員會의 組織·運營 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節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 등의 調査와 救濟

第39條【委員會의 調査對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行위(이하 "調查對象 人權侵害行爲"라 한다)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다.

1. 第8條에 規定한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
2. 第8條에 規定한 公務員,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하는 者, 軍人 및 軍務員을 제외한 다른 國家機關 소속 公務員 또는 그의 使嗾를 받은 者가 행한 第8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위로서 委員會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在籍 委員 3分의 2 이상의 賛成으로 調査하기로 議決한 行위
3. 第10條 내지 第12條에 規定한 差別行爲

第40條【陳情人의 邁格】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로 被害를 입은 者나 그러한 行위에 관하여 알고 있는 者는 委員會에 陳情할 수 있다.

第41條【陳情의 方式】 ① 委員會에 陳情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文書로 陳

情하여야 한다. 다만 文書에 의할 수 없는 特別한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口述로 陳情할 수 있다.

1. 陳情人의 姓名과 住所
 2. 被陳情人의 姓名 기타 被陳情人을 特定할 수 있는 사항
 3. 陳情의 趣旨와 陳情의 原因이 된 事實
- ② 拘禁·保護施設에 收容 또는 保護되어 있는 者가 委員會에 陳情하고자 하는 때에는 拘禁·保護施設의 公務員 및 職員은 그 陳情書 작성을 許容하여야 한다.
- ③ 第2項의 公務員과 職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陳情書를 委員會에 지체없이 送付하여야 하며 그 接受證明書를 委員會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陳情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第42條【陳情의 却下】 ① 委員會는 陳情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陳情을 調査하지 아니하고 却下한다.

1. 當該 陳情의 原因이 된 事實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經過하여 접수된 경우. 다만, 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陳情이 委員會의 調査對象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3. 陳情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明白히 虛偽이거나 理由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匿名으로 陳情을 제기한 경우
 5. 被害者가 아닌 者의 陳情에 관하여 被害者가 調査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6. 陳情人이 陳情을 取下한 경우. 다만, 被害者가 아닌 者가 제기한 陳情이 取下되더라도 被害者가 그 陳情取下에 同意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陳情의 趣旨가 當該 陳情의 原因이 된 事實에 관한 法院의 確定判決이나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反하는 경우
 8. 陳情의 原因이 된 事實과 同一한 事案에 관하여 搜查, 裁判, 行政審判, 國會의 國政監査나 國政調查, 憲法裁判所의 審判이나 憲法訴願, 監査院의 監査, 國民苦衷處理委員會의 苦衷民願調查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國家機關에서 權利救濟節次가 진행중인 경우
 9. 기타 委員會가 調査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明白히 인정되는 경우
- ② 委員會는 第1項에 의하여 陳情을 却下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陳情을 關係機關에 移送할 수 있다. 이 경우 陳情을 移送받은 機關은 委員會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處理結果를 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 ③ 委員會는 調査를 개시한 후에도 그 陳情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陳情을 却下한다.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陳情을 却下한 경우 그 陳情人은 그 却下事由가 消滅한 때에는 委員會에 다시 陳情할 수 있다.

第43條【調査의 開始】 ① 委員會는 陳情을 접수한 때에는 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陳情을 却하지 않는 한 지체없이 그 内容에 관하여 必要한 調査를 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는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가 있다고 믿을만한相當한 根據가 있고, 그 내용이 重大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

第44條【調査의 目的】 ① 委員會의 調査는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로 인한 被害救濟를 目的으로 하여야 하며 國家機關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는 個人的 私生活을 침해하거나 繫屬증인 裁判 또는 搜查증인 事件의 訴追에 부당하게 관여할 目的으로 調査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5條【調査의 方法】 ① 委員會는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취할 수 있다.

1. 陳情人, 參考人, 被陳情人에 대한 陳述書 提出要求.
 2. 陳情人, 參考人, 被陳情人의 出席要求 및 陳述 聽取.
 3. 鑑定人の 指定 및 鑑定의 依賴
 4. 被陳情人 또는 被陳情人의 소속 機關, 團體등에 대하여 關係資料나 物件의 提出要求 또는 제출된 資料나 物件의 領置
- ② 委員會는 調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 委員이나 職員으로 하여금 陳情의 原因이 된 事實이 발생한 場所 기타 필요한 場所에서 關係 資料, 物件, 施設에 대하여 實地調查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委員이나 職員으로 하여금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陳情人, 參考人, 被陳情人의 陳述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委員이나 職員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實地調查를 받는 機關, 團體 등이나 그 職員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나 物件의 提出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資料나 物件을 領置할 수 있다.
- ⑤ 第2項 내지 第4項의 경우 當該 委員이나 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46條【調査의 限界와 事實照會】 ① 委員會가 第45條第1項第4號, 第2項 및 第4項의 규정에 의하여 關係資料나 物件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資料, 物件 또는 施設에 대한 實地調查를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中央國家機關의 長으로부터 당해 資料, 物件 또는 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確認書가 委員會에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資料나 物件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資料, 物件 또는 施設에 대한 實地調查를 할 수 없다.

1. 公개하면 國家安全保障·國防·統一·外交關係등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害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搜查·裁判·刑執行에 관한 資料나 物件으로서 공개하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가. 進行중인 犯罪搜查 또는 繫屬증인 裁判에 重大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事件關係人的 名譽나 私生活의 祕密 또는 生命·身體의 安全을 害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搜查方法상의 機密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委員會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資料나 物件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資料, 物件 또는 施設에 대

한 實地調查를 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國家機關에 照會하여 필요한 事項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第47條【陳情의 移送】 ① 委員會는 陳情에 관하여 다른 國家機關에서 처리함이相當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陳情을 그 機關에 移送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國家機關은 移送받은 陳情과 관련된 사건의 處理結果를 지체없이 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第48條【調査의 中止】 委員會는 陳情의 當事者나 參考人的 所在不明 또는 疾病 기타 사유로 調査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事由가 解消될 때까지 調査를 中止할 수 있다.

第49條【臨時救濟措置 勸告】 ① 委員會는 陳情을 접수한 후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蓋然性이 있고, 이를 放置할 경우 回復하기 어려운 被害發生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陳情에 대한 決定 이전에 陳情人이나 被害者の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被陳情人, 그 所屬機關·團體의 長 또는 監督機關의 長에게 다음 각號의 措置를 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1.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의 中止
 2.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被陳情人의 당해 職務로부터의 排除
 3. 기타 被害者の 人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救濟措置
- ② 제1항에 의한 勸告를 받은 被陳情人,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尊重하여야 한다.

第50條【合意勸告】 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하는 과정에서 搜查對象 人權侵害行爲의 蓋然性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被害者 및 被陳情人에게 合意를 勸告할 수 있다.

第51條【調停節次의 開始】 ① 委員會는 被害者와 被陳情人 사이에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合意勸告에 따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當該 陳情을 調停에 回附할 수 있다.

② 被害者와 被陳情人은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合意勸告에 따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③ 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回附 또는 調停申請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調停節次를 開始하여야 한다.

④ 調停節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52條【調停】 ① 調停은 調停節次의 開始 이후 被害者와 被陳情人 사이에 合意된 사항을 調停書에 기재한 후 被害者와 被陳情人이 記名捺印하고 委員會가 이를 確認함으로써 成立한다.

② 委員會는 調停節次의 開始 이후 被害者와 被陳情人 사이에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合意의 內容이相當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職權으로 陳情에 관련된 모든 事情을 참작하여 陳情의 公平한 解決을 위한 決定(이하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에는 다음 각號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의 中止
2. 同一 또는 類似한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의 再發防止를 위한 措置
3. 原狀回復, 損害賠償 기타 필요한 救濟措置

④ 委員會는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 被害者 및 被陳情人에게 지체없이 이를 送達하여야 한다.

⑤ 被害者 및 被陳情人은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이 送達된 날로부터 2週日 以內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第53條【調停의 效力】 ①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과 被害者 및 被陳情人이 第5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은 裁判上의 和解와 동일한 效力이 있다.

② 委員會는 被害者나 被陳情人이 第5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신청한 경우에는 被害者에게 다른 救濟手段에 관하여 助言할 수 있다.

第54條【法律救助】 ① 委員會는 第5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에 대한 異議申請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를 위한 法律救助를 결정할 수 있다.

② 委員會가 第1項에 의한 法律救助를 결정한 경우 大韓法律救助公團기타 機關에 피해자를 위한 法律救助를 요청할 수 있다.

③ 大韓法律救助公團은 제2항에 의하여 法律救助를 요청받은 경우 피해자에게 法律救助를 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의한 法律救助의 節次, 內容 및 方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5條【救濟措置 등의 勸告 및 意見表明】 ① 委員會는 陳情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에 해당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被陳情人, 그 所屬機關·團體의 長 또는 監督機關의 長에게 第52條第3項 각號의 사항을 포함하는 救濟措置를 勸告하거나 意見을 表明할 수 있다.

② 委員會는 陳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人權에 관한 法令·制度·政策·慣行의 改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 國家機關의 長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改善을 勸告하거나 意見을 表明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받은 被陳情人 또는 機關·施設·團體의 長은相當한理由가 없는 한 이를 尊重하여야 한다.

第56條【陳情의 棄却】 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한 결과 陳情의 內容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陳情을 棄却한다.

1. 事實이 아닌 경우
2.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被害回復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別途의 救濟措置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第57條【告發 및 搜查依賴】 ① 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한 결과 陳情의 内容이 犯罪行爲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刑事處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檢察總長에게 告發할 수 있다. 다만, 被告發人이 軍人 또는 軍務員인 경우에는 各軍 參謀總長에게 告發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하면서 犯罪嫌疑에 대한 상당한 蓋然性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搜查機關의 長에게 搜查를 依賴할 수 있다

第58條【意見陳述機會의 附與】 ① 委員會는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救濟措置의 勸告 및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告發을 하기 전에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委員會에 出席하여 그 意見을 陳述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

第59條【決定의 通知】 委員會는 第42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送,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中止,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救濟措置 勸告, 第54條第1項에 의한 法律救助 決定, 第55조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意見表明, 第56條의 規定에 의한 棄却, 第5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한 경우에는 이를 當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60條【調查등의 非公開】 委員會의 陳情에 대한 調査, 調停 및 審議는 非公開로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때에는 이를 公開할 수 있다.

第61條【勸告등의 公表】 ① 委員會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意見,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 第5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意見과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措置結果등의 내용을 公表할 수 있다.

② 委員會는 第5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發 및 搜查依賴를 할 경우에는 그 告發 또는 搜查依賴의 대상인 嫌疑事實을 제외하고 當事者, 罪名, 搜查機關名, 告發 또는 搜查依賴 日字만을 公表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등을 公表하는 경우 個人的 私生活의 祕密이 侵害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개인의 성명을 匿名으로 하는 등 個人的 私生活의 祕密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第62條【措置結果等의 通報】 ① 委員會로부터 第19條, 第55條第1項, 第2項 및 第57條第1項,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告發, 搜查依賴를 받은 關係 國家機關 · 團體의 長이나 監督機關의 長, 檢察總長, 各軍 參謀總長 또는 搜查機關의 長은 勸告,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받은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그 措置結果나 措置計劃을 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로부터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받은 關係 國家機關 · 團體의 長이나 監督機關의 長은 그 勸告를 받은 때로부터 48時間 이내에 그 措置結果를 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③ 委員會로부터 第19條, 第49조제1항, 第5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받은 關係 國家機關 · 團體의 長이나 監督機關의 長이 그 措置結果 등을 通報함에 있어 委員會의 勸告를 受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理由를 說明하여야 한다.

第63條【法務部長官에 대한 經由 및 通報】 ① 委員會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 및 國會에 年例報告書 또는 特別報告書를 제출할 때에는 法務部長官을 經由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는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款의 變更, 第19條 第2號, 第5號, 第7號 및 第9號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意見表明,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第5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意見表明, 第5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한 경우와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結果 등을 通報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法務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第64條【人權狀況分析報告書】 法務部長官은 每年 5月 31일까지 第19條, 第49조제1항, 第55條第1項, 第2項 및 第57條 第1項,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告發 또는 搜查依賴와 第6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結果나 措置計劃 등을 종합하여 人權狀況을 分석하고 그 改善對策을 大統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65條【準用規定】 委員會가 第4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하는 경우에는 第44條乃至 第55條, 第57條 내지 第59條, 第61條, 第62條, 第63條를 준용한다.

第66條【陳情處理節次等】 이 法에 規定된 것 이외에 陳情處理節次等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章 國家의 支援 등

第67條【公務員등의 派遣】 ① 委員長은 委員會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을 經由하여 國家機關 · 地方自治團體 · 教育機關 또는 研究團體에 대하여 公務員 또는 職員의 派遣를 要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委員會와 협의하여 그 所屬 公務員 또는 職員을 委員會에 파견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파견된 公務員 또는 職員은 그 所屬機關 또는 團體로부터 獨立하여 委員會의 業務를 수행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公務員 또는 職員을 파견한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委員會에 파견된 者에 대하여 人事 · 處遇 등에 있어서 불리한 措置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8條【出捐金의 交付】 ① 國家는 委員會의 設立, 施設, 運營 및 業務에 필요한 經費를 充當하기 위하여 豐算의 범위안에서 委員會에 出捐金을 交付할 수 있다.

② 委員會는 每年 出捐金豫算要求書를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出捐金豫算要求書를 調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예산당국에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要求, 交付, 使用 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69條【財產의 寄附】 ① 法人·團體 및 個人은 委員會의 施設 및 運營에 관한 支援을 위하여 委員會에 金錢 기타 財產을 寄附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부받은 財產은 委員會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使用하여야 한다.

第5章 罰則

第70條【罰則】 ① 調查對象 人權侵害行爲에 한 虛偽의 事實을 委員會에 陳情한 者는 5年 以下の懲役 또는 1,000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②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以下の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1.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41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③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年 以下の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71條【過怠料】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0萬원 以下の 過怠料에 處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視察을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2. 정당한 이유없이 第45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出席要求에 應하지 아니한 者

3. 정당한 이유없이 第45條第1項第4號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나 物件의 提出要求에 應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資料나 物件을 提出한 者

4. 정당한 이유없이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地調查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② 第35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00萬원 以下の 過怠料에 處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委員會의 요청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法務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 以内에 法務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法務部長官은 忌避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內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設立準備】 ① 法務部長官은 이 法 施行日부터 30日 以内에 7人 以內의 設立委員을 委嘱하여 委員會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게 한다.

② 設立委員은 定款을 作成하여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 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忌避없이 連名으로 委員會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 設立委員은 委員會의 設立登記를 한 후 忌避없이 委員會에 그 事務를 引繼한다.

⑤ 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⑥ 委員會가 設立될 때까지 委員會의 設立을 위하여 支出하는 經費는 委員會가 이를 부담한다.

第3條【人權委員의 任期에 관한 特例】 ① 第2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委員會의 설립 당시 委員(委員長은 제외한다) 중 常任委員 1人과 非常任委員 3人の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期가 2年인 委員에 대하여는 任命狀에 그 任期를 明示하여야 한다.

인권위원회 법(안)

인권법제정및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1) 이 법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말한다.
- (2) 이 법에서 "구금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2.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
 3. 군교도소, 군구치소 및 현병대에 설치된 영창
 4. 외국인보호소
- (3) 이 법에서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서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4) 이 법에서 "당사자"라 함은 법 제17조의 신청인, 신청인이 인권침해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그 피해자, 피신청인을 말한다.
- (5) 이 법에서 "관계인"이라 함은 위원회의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는 정보 및 자료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 (6) 이 법에서 "소속기관 등"이라 함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속한 국가기관, 법인,

시설,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차별금지

- (1) 성별, 종교, 사상, 연령, 장애, 병력, 출신학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행형기록,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용모 등의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가족의 상황, 인종 또는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본다.
- (2) 출산 또는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 및 성과 관련된 언행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성별에 기한 차별로 본다.

제 2 장 위원회 조직

제4조 위원회 설치등

- (1)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한다.
- (2) 위원회와 그 위원은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인권관련조약과 국제관습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3)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중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위원회가 규칙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4)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독립성은 최대한 존중된다.

제5조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상 15인이하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인권위원은 전원 상임으로 한다.
- (3) 인권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제6조 임명

- (1) 인권위원은 국회의 청문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2) 대통령은 인권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인권문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청문절차는 국회법 제65조에 의한다.

(4) 국회는 제3항의 청문절차를 개최함에 있어 민간인권단체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및 의견서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위원의 자격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에 있고, 신망이 높으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 인권위원의 임기 등

(1) 인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2) 인권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대통령은 인권위원이 궐위된 때 또는 인권위원이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90일이내에 제6조의 절차를 거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선출과 직무

(1) 위원장은 인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최연장자인 인권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신분보장

인권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1조 겸직 등의 금지

(1) 인권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다른 행정부서의 공무원의 직
3. 기타 보수를 받는 직

(2) 인권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제12조 전체위원회

(1) 위원회에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위원회를 둔다.

(2) 전체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전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이전의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소위원회가 의결하지 못하거나 전체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4. 전체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체위원회에서 인정한 사항

5. 이 법에서 전체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4) 전체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소위원회

(1) 위원회에 인권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사무처 등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한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한다.

(4) 위원회는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5조 조사관 등

(1)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검사 및 조사관을 둔다.

(2) 위원회의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 (3) 조사관 및 전문위원의 수 및 대우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역할 및 권한

제16조 업무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법령안에 관하여 자문 또는 권고
2.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법령에 관하여 정부와 국회에 의견표명 또는 권고
3.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 관련정부기관과의 협의 및 권고
4. 인권침해나 관행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일반기준의 제시 및 권고
5.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의 비준여부에 대한 자문 또는 권고
6. 법령이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사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조사 및 권고
8.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정부보고서를 작성하는 국가기관에 의견제출 및 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기구에 정부보고서와 독립하여 의견제출
9. 인권교육 및 홍보
10.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1. 인권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구조
12.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시찰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
13. 인권단체 및 국제인권기관과의 교류·협력
14.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소송에서의 의견제출
15. 기타 인권보장 및 향상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인권지침의 작성

- (1) 위원회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일반기준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제1항의 지침을 공표하고,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 청문회

- (1) 위원회는 중요한 인권관련 사안에 대하여 정부 및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 (2) 제1항의 청문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인권전문가의 양성

위원회는 교육부와 협조하여 대학에 인권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인권도서관

- (1)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인권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

- (2) 인권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법률구조

- (1) 위원회는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국제인권기구에 제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대리하여 제소를 할 수 있다.
- (3) 제1항, 제2항의 법률구조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서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등

- (1) 위원회는 매년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긴급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3) 관련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제1항, 제2항의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및 조치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제1항, 제2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 4 장 조사 및 심리

제23조 구제신청

- (1) 인권을 침해당한 자 또는 인권침해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신청시 구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인권침해사실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조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권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보호되어 있는 자가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금시설 소속의 공무원 및 다수인보호시설 소속의 직원은 그 신청서를 비밀리에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공무원과 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그 접수증명원을 위원회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조사의 개시

(1) 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피해자가 아닌 자의 신청에 관하여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행위가 있거나 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1항 2호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에서 신청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그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5) 위원회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 또는 이송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조사의 방법

(1)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사자, 관계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2. 당사자, 관계인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서류, 물건 등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된 서류나 물건의 영치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4. 당사자, 관계인,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조회

(2)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서류나 물건에 대한 현지조사와 당사자,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 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이나 직원은 현지조사를 받는 기관, 법인, 시설, 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서류나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이나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압수, 수색영장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로부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항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항의 현지조사가 거부된 경우

(6) 제5항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중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구금시설 등의 시찰

(1) 위원회는 구금시설과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찰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시찰의 경우 제25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제27조 비밀준수의무

인권위원이나 인권위원이었던 자 및 소속 직원이나 소속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1)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9조 조정

(1) 위원회는 제23조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조정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5)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0조 심리

(1) 위원회는 조사된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2. 증인의 소환 및 선서 후 증언청취
3.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회
4. 기타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2) 위원회는 제36조 내지 제38조의 의결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출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1조 증인 등의 보호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나 증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제23조 제1항의 신청인이나 제30조 제1항 2호의 증인은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거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인권위원의 제척 등

(1) 인권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인권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나 상환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때
2. 인권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
3. 인권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인권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때

(2) 당사는 인권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3) 인권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3조 심리 등의 공개

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고, 의결은 공표한다. 다만, 심리는 전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심리장소의 질서유지

위원회는 심리장소에 출석하는 당사자, 관계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 임시구제조치

위원회는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박한 필요가 있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우 제36조 제2항의 명령을 의결하기 전에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소속 기관, 시설, 단체의 장에게 임시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 구제명령 및 권고 등

(1) 위원회는 신청이 이유없는 경우 사건을 기각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신청이 이유있는 경우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속한 기관, 법인, 시설, 단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다수의 내용을 포함하는 명령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2호에 있어 그 실시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침해행위의 중단
2. 침해된 권리의 회복
3. 장래 동일하거나 유사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및 실시
4.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3) 제2항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속한 기관, 법인, 시설, 단체의 장은 위원회가 정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조사 및 심리결과 인권보장 및 향상을 위하여 법령, 제도, 정책, 행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7조 징계요구

(1) 위원회는 조사결과 공무원인 피신청인이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하는 경우 및 제36조 제2항의 구제명령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이 위원회가 정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징계요구를 받은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는 징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총무처장관 또는 당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대하여 그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고발

위원회는 조사 및 심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제39조 방지조치의 협의

(1) 피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속한 기관, 법인, 시설, 단체의 장이 제36조 제2항 제3호의 구제명령을 받는 경우 피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속한 기관, 시설,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내에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협의절차에 대하여서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 재심리 청구

(1) 다음 각 호의 자는 인권위원회로부터 그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인권위원회에 재심리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이 기각된 자
2. 제36조 제2항에 의한 구제명령을 받은 자
3. 제37조에 의한 징계대상자 및 징계요구를 받은 자

(2) 재심리 청구는 그 청구내용과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인권위원회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심리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제41조 재심리 및 의결

(1) 재심리 및 의결은 전체위원회에서 한다.

(2) 재심리 의결의 내용 및 효력은 제36조 내지 제38조를 준용한다.

제42조 재심리 의결에 대한 이의

(1) 제40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재심리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배상금에 증감에 관한 소송일 때에는 위원회 이외에 상대방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제 5 장 인권단체등과의 협력

제43조 인권단체와 협력

(1)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년 1회이상 인권현황 및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인권단체의 자문 및 의견을 구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44조 민간전문가의 채용

(1)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업무에 전문적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일정한 기간 동안 채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하여 채용되는 자의 대우 및 보수에 관하여서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벌칙

제45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선서를 한 후 허위의 증언을 한 자
4.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법률의 규정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권위원회의 출석요구 또는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법률의 규정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제25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또는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법률의 규정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 또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찰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법률의 규정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인권위원회 협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인권위원 및 소속 직원이 제2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비밀준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과태료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명령을 따랐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위원의 임기

(1)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인권위원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권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명된 인권위원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인권위원 수에서 1을 제한 수의 2분의 1을 임기가 단축되는 인권위원의 수로 한다.

(2) 제1항의 인권위원의 선출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공추위 인권위원회법(안)과 법무부 인권법(안)과의 주요쟁점 비교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 위원회

번호	항목	인권위원회법(공추위안)	인권법(법무부안)
1	명칭	인권위원회법	인권법
2	관할	헌법,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조약 및 국제관습법 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간의 권리와 자유	헌법,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권리와 자유
3	차별금지 사유	법무부안의 차별금지사유에 사상, 성적지향, 병력, 행형기록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키고 이를 예시적으로 열거	성별, 종교, 연령, 장애 등 13개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
4	위상	독립국가기구 자율적 운영에 필요한 규칙제정권 부여	재단법인, 위원과 별도로 이사회 존재
5	위원 임명 방식	국회의 청문절차 거쳐 대통령이 임명	정부차관4인의 당연직 이사와 법무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선임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위원임명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6	법무부와 의 관계	독립국가기구이므로 법무부가 인사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음	법무부가 주무관청으로서 11개 조항에 걸쳐 위원회의 인사, 업무활동, 예산에 관여함
7	예산	독립국가기구로서 감사원과 같이 예산편성시 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됨	법인이므로 정부보조금을 받게 되고, 예산회계법등에 따라 위원회에 대한 정부보조금지급에 대하여 법무부가 위원회의 사업내용을 심의하고, 보조금지급여부를 결정함

번호	항목	공추위안	법무부안
8	조직	사무총장을 위원장이 임명 사무처이외에 조사관, 전문위원, 인권도서관 등 을 별도의 조직으로 둠	사무총장을 대통령이 임명 사무처만 규정
9	업무의 주요내용	법무부안의 내용이외에 인권지침 제정, 인권상담 및 법률구조, 법원 의 허가를 받아 중요인권관련소송 에 대한 의견제출 등 8개 항목 추 가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관련 법령 등에 대한 권고, 인권침해행위 등의 조사, 구금시설 등의 시찰 등 7개항 목
10	조사대상	다른 국가기관에서 구제신청의 대 상이 되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 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가능	8개의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
11	조사시효	두지않음	1년, 다만, 전체위원회의 결의가 있 는 경우 예외
12	조사방법	당사자출석, 자료제출, 현지조사가 원칙	서면조사가 원칙, 다만, 필요한 경우 당사자 출석 등 가능
13	조사의 한계	다른 법률에 의한 제한 이외에 다 른 제한이 없음	위원회의 조사는 국가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료의 제출이나 실지조사의 경우 조사대상기관의 장이 공무상 비밀, 국익 침해우려, 수사나 재판에 지장 을 초래할 우려, 사생활 침해우려, 교정기관과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 우 이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조회만 가능

번호	항목	공추위안	법무부안
14	조사 불응시 제재방안	자료제출요구나 현지조사거부시 최후 조사수단으로 위원회의 과견 검사를 통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압수·수색 하고, 출석불 응의 경우 형사처벌	법무부장관이 과태료부과
15	심리절차	조사후 심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함	규정이 없음
16	구제 신청인 및 증인보호	위원회에 구제신청이나 증언함으 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 도록 함	규정이 없음
17	임시구제	위원회가 긴급한 경우 임시구제조 치를 명하도록 함	규정이 없음
18	결정의 효력	구체적 구제조치(침해행위의 중지 등)에 대하여서는 구제명령을 내리 고, 법령,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 우 그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	권고만 함
19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협의의무	조사결과 장래 인권침해 방지를 위 하여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치 를 강구하고 실시할 의무 부과	규정이 없음.
20	위원회 결정불 이행시 조치	개인(민간인, 공무원)과 사적시설 의 경우 형사처벌, 국가기관에 대 하여서는 그 기관의 장에 대한 징 계요구	규정이 없음
21	민간단체 와의 관계	위원회가 중요 인권사안에 대하여 청문회 및 정기협의를 통하여 민 간단체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단체와 공동업무수행 및 민간전문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민간인권단체를 법무부에 등록하게 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 고, 보조금사용과 사업계획에 대하 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사 를 받음